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0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김예지 · 고동진 · 박덕흠
김소희 · 서미화 · 김선민
김대식 · 백종현 · 최수진
조경태 · 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관련 사업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장애인건강관리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2.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3.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건강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장애인건강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장애인건강관리센터)</u> <u>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1. 장애인 건강관리사업</u> <u>2.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u> <u>3.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u> <u>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건강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u>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u>호의 사업을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u>시장·군수·구청장</u>-----. ② (현행과 같음)
---	---